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에 따라 감귤의 시장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품질 감귤의 일부를 비상품으로 구분해 처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은 제21조에 규정에 의해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18조 제4항 상품감귤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상 품 기 준 |
| 과일의 크기 | o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과실 크기가 횡경 49밀리미터 이상 71밀리미터 미만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3그램 이상 136그램 미만인 밀감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S** | **S** | **M** | **L** | **2L** | | 규격  (밀리미터) | 49이상  ~54미만 | 54이상  ~59미만 | 59이상  ~63미만 | 63이상  ~67미만 | 67이상  ~71미만 | | 무게  (그램) | 53이상  ~63미만 | 63이상  ~83미만 | 83이상  ~107미만 | 107이상  ~124미만 | 124이상  ~136미만 |   o 위 상품 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도 10브릭스(°Bx)이상인 온주밀감 중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본다. |
| 당 도 | o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당도 10브릭스(°Bx) 이상  o 극조생 온주밀감은당도 8브릭스(°Bx) 이상  o 조생 및 보통 온주밀감은 당도 9브릭스(°Bx) 이상  o 단,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검사는 11월 15일 이전 검사품에 한한다. |
| 껍질뜬것 |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표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
| 결점과의 정 도 | o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 |

온주밀감은 크기, 당도, 껍질이 뜬 정도, 결점과 정도를 기준으로 상품 판정을 하는데 비상품 기준은 이러한 상품 기준 이외의 것을 말한다. 고품질 감귤생산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시장유통이 차단된 비상품 감귤은 가공용으로 수매되거나 제주도 농민 자체적으로 농가에 감귤을 자가격리한다.